



# 규정

## 산학협동 운영 규정

문서번호 TWP-A603

제정일자 1996. 08. 14.

개정일자 2017. 01. 26.

개정번호 4      페이지 1/7


### 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산학협동조정위원회
- 제3장 기술분과(계열별) 산학협력협의회
- 제4장 현장실습 및 산업체 위탁교육
- 부칙
- 별첨

작성부서	산학협력처	제정일자	1996. 08. 14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산학협력처장	교무처장	기획홍보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3
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<b>산학협동 운영 규정</b>	개정일자	2017. 01. 26.
		개정번호	4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동교육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산학협동”이라 함은 이 대학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

1.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
2.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
3.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

② “산학협동교육”이라 함은 이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업·상업과 그 밖의 산업체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해 이 대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시키는 교육을 말한다.


**제3조(업무분담)** 이 대학교의 산학협동 관련 업무는 산학협력처가 담당하며, 산학협동과 산학협동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이 대학교에 산학협동조정위원회와 각 전공에 기술분과(계열별) 산학협력협의회를 둔다. <개정 2017.01.26.>

**제4조(업무지원)** 산학협력처는 산학협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산학협동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산업체 현황조사 및 산학협동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
3. 산학협동조정위원회 및 기술분과(계열별) 산학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<개정 2017.01.26.>
4. 산학협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조달
5. 그 밖에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전공업무)** 각 전공은 산학협동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산학협동 대상업체의 선정 및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
2. 기업의 경영진단 및 자문 활동에 관한 사항
3.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 조달에 관한 사항
4. 현장실습지도에 관한 사항
5. 산업체 실습기기의 사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603
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<b>산학협동 운영 규정</b>	개정일자	2017. 01. 26.
		개정번호	4

6. 산업체 취업 졸업생의 추후지도에 관한 사항
7.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
8.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산학협동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
## 제2장 산학협동조정위원회

**제6조(위원회 설치)** 이 대학교는 산업체와의 산학협동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계열별 산학협동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7조(조정위원회 구성)** ① 조정위원회는 산학협력처장을 포함하여 각 학부의 학부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, 산학협력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.

**제8조(조정위원회 기능)**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조정한다.

1. 산학협동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전공 또는 학부간 산학협동의 조정에 관한 사항
3. 이 대학교의 산업체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산학협동의 활성화 및 산학협동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3장 기술분과(계열별) 산학협력협의회 <개정 2017.01.26.>

**제9조(산학협력협의회 조직)** ① 이 대학교는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가족회사와 공동으로 기술분과(계열별) 산학협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1.26.>

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가족회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17.01.26.>


③ <삭제 2017.01.26.>

④ <삭제 2017.01.26.>

⑤ <삭제 2017.01.26.>

⑥ <삭제 2017.01.26.>

**제10조(회의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, 협의회장 소집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603
	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<b>산학협동 운영 규정</b>		개정일자	2017. 01. 26.
			개정번호	4

- ② 협의회 의결 내용은 산·학간에 있어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,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<삭제 2017.01.26.>
- ④ 책임교수는 협의회 개최 신청 및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가족회사 운영규정의 별지 서식을 활용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**제11조(공동추진사업)** 협의회는 산학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.

1. 이 대학교와 산업체간의 협동연구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3. 산업체의 이 대학교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
4. 산학간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확대 협조에 관한 사항
5.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
6.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대학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산학협동 및 산학협동교육에 필요한 사항


**제12조(소요예산의 충당)** 산학협동 및 산학협동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이 대학교와 산업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.

**제13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정위원회 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## 제4장 현장실습 및 산업체 위탁교육 <신설 2011. 2. 29>

**제14조(현장실습)** ① 제14조는 학사규정 제4장 제29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- ②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전공은 제2학년(3년제 전공은 제3학년)의 하계 및 동계방학 중 4주,160시간 이상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산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계획에 따라 이 대학교에서 4주,160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조기 현장실습은 제1학년 하계 및 동계방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현장실습 시행전공의 경우 4주,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은 6학점 이내, 5개월 이상의 현장실습은 한 학기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⑤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현장실습 학점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603
	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<b>산학협동 운영 규정</b>		개정일자	2017. 01. 26.
			개정번호	4

을 취득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1.26.>

1. (NCS 기반) 현장실습 평가서 <개정 2017.01.26.>
2. (NCS 기반)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<개정 2017.01.26.>
3. <삭제 2017.01.26>
4. <삭제 2017.01.26>
5. <삭제 2017.01.26>
6. (NCS 기반) 현장실습 출석부 <신설 2017.01.26.>

⑥ 현장실습의 평가는 산업체에서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 60%. 해당전공 현장실습 지도교수 또는 담당교수의 평가 40%로하고, 현장실습 지도교수 또는 담당교수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산업체 출결사항(조퇴 및 지각을 포함한다)
2. 실습일지 정리 상태
3. 담당교수의 지도사항 및 산업체 적응능력

⑦ 현장실습에 필요한 절차, 관리 등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실습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.

**제15조(산업체 위탁교육)** ① 산업체 위탁교육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, 이 대학교의 학칙 제17장 제58조에 따라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②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,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,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,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,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체위탁교육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.

**제16조(위탁교육심의위원회)**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**제17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603
	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<b>산학협동 운영 규정</b>		개정일자	2017. 01. 26.
			개정번호	4
		페이지	7/7	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별첨**

[별지 제1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2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3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4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1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


[별지 제2호 서식]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3호 서식]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4호 서식]<삭제 2017.01.26.>